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
------	--

제출일자 2005. 9. .

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재산중 취득사유를 원평1동 사무소 신축부지 매입을 “문화복지회관”의 기능을 포함한 신축부지 매입으로 변경코자 함

2. 수정 주요골자

-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취득재산중 취득사유를 “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”를 “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확보”로 변경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지방재정법 제77조, 같은법 시행령 제84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

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

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변경안의 취득재산중

취득사유를 “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”를

“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부지 확보”로 수정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200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【취득사유】 ○ 원평1동사무소 신축부지 확보	200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【 취득사유】 ○ <u>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</u> <u>신축부지 확보</u>

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^2)

[illegible]

2005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

회계명: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, m²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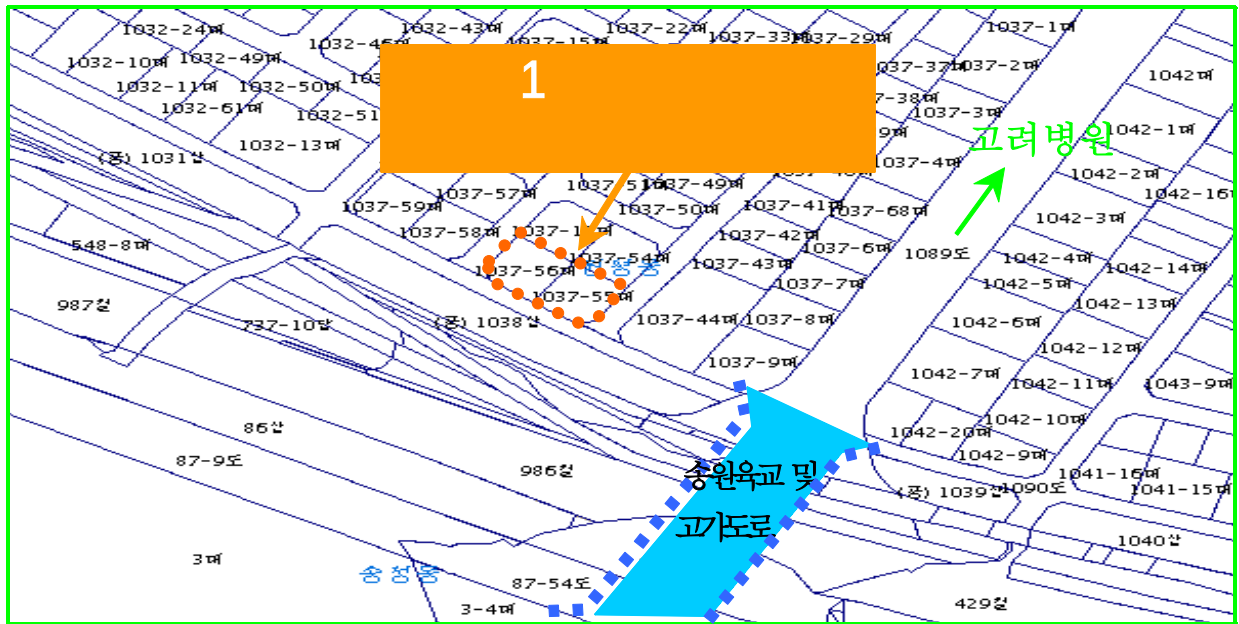
[illegible]

취득대상토지

□ 재산의 표시

- ▶ 구미시 원평동 1037-55번지 지목 : 대지 면적 : 369.5㎡
- ▶ 구미시 원평동 1037-56번지 지목 : 대지 면적 : 369.2㎡

□ 위치도



□ 현황 사진

